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감정평가법인 선정 평가 세부기준

1. 일반사항

가. 이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5조제1항 제1호[별표 3] 감정평가법인 선정 평가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관리처분을 위한 재산 또는 권리에 대한 감정평가에 적용한다.

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역면적 10,000㎡미만의 정비사업의 경우(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제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시스템을 활용한다.

다.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위한 공고기간은 7일로 한다. 다만 자치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공고기간은 변경할 수 있다. 감정평가법인 선정 공고일자 30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 선정결과를 공고해야한다.

라. 참여업체가 1개 업체(선정하고자 하는 업체 수가 2인 경우 2개 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유찰로서 재공고 모집(입찰)을 실시하되, 2회 연속 유찰 시 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당초 참여한 업체를 감정평가법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마. 감정평가법인 선정 입찰에 참여하는 법인은 동 평가 내용에 대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또는 정비사업시행자가 발급한 자료 등 증빙 자료를 감정평가 참여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자치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필요 시 관계기관 및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

사.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별로 수행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용역 지분율에 의해 산정하고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한다.

아. 평가 결과가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 선정한다.

2. 적용기준

가. 감정평가법인의 업무수행실적 (조례 별표3 평가항목①)

- 1) 평가 대상 기간은 감정평가법인 모집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 : 공고일이 2016.5.20.이고 최근 3년인 경우 해당 기간은 공고일 전일인 2016.5.19.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 평가 대상 기간 : 2013.5.20.~2016.5.19.>
- 2) 평가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를 완료한 실적으로 한정한다.
 - 동일한 정비사업 구역에서 한 개 업체가 감정평가업무를 여러 개로 구분하여 수행한 경우 평가 건수는 1건으로 하고 평가금액은 합산한다.
- 3) 업무수행실적은 입찰참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정비사업시행자)가 발행한 수행실적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4)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시스템을 활용하여 선정된 실적도 포함한다.

나. 감정평가사 수 (조례 별표3 평가항목②)

- 1) 감정평가사 수 산정 기준은 감정평가법인 모집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기존 평가참여 규모 (조례 별표3 평가항목③)

- 1) 평가 대상 기간은 감정평가법인 모집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 : 공고일이 2016.5.20.이고 최근 3년인 경우 해당 기간은 공고일 전일인 2016.5.19.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 평가 대상 기간 : 2013.5.20.~2016.5.19.>
 - ※ 기한 내 자치구청장이 선정한 건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자치구청장이 선정한 기준은 감정평가법인 선정 결과 공고일로 한다. 다만, 자치구청장이 선정 결과 공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자치구에서 감정평가법인을 결정(선정)한 일자로 내부방침 등의 결재일로 본다.
- 2)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 3) 입찰참여법인에서 제출된 서류(서식5) 내용(건수, 평가금액)이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내용보다 적을 경우, 자치구는 해당 법인에게 소명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소명서 제출시 타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누락 1건 당 5점씩 감점한다.
(평가총액, 평가횟수 각각 적용)
- 4)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시스템을 활용하여 선정된 실적도 포함한다.

라. 행정처분 횟수 (조례 별표3 평가항목④)

- 1) 행정처분 횟수 기간은 감정평가법인 모집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2)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발급된 행정처분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마.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조례 별표3 평가항목⑥)

- 1) 자치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선정위원은 최소 6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2) 선정위원 중 감정평가사의 경우 입찰 참여업체에 소속된 자는 제외한다.
- 3) 평가항목별로 최고 및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다만,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나머지 위원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 4) 감정평가계획 제안서 작성 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1) 업무추진계획
 - 합리적인 감정평가를 위한 추진계획, 추진일정 등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
 - (2) 인력투입계획
 - 참여 감정평가사 평균 실무경력
 - 감정평가 업무의 특성, 내용 및 범위, 평가업무 수행상 주안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를 달성하기 위한 업무별 인력 투입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3) 사후서비스 제안정도
 - 사업수행 과정 및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민원 및 문제점 도출,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상대평가 시 참여업체 수별 평가점수 배분 기준

가. 적용항목: 감정평가법인의 업무수행실적(건수 및 금액), 기존 평가참여 규모(평가총액 및 횟수)

나. 참여업체 수별 배분 기준

- 1) 입찰에 참여한 업체수별 배분(등급)은 다음 표와 같다.

등급구분 참여업체수	상(하)위 20%이내	20%초과~40%	40%초과~60%	60%초과~80%	80%초과~100%
2	1		1		
3	1	1		1	
4	1	1	1	1	
5	1	1	1	1	1
6	1	1	1	1	2
7	1	1	2	1	2
8	1	2	1	2	2
9	1	2	2	2	2
10	2	2	2	2	2
11	2	2	2	2	3

등급구분 참여업체수	상(하)위 20%이내	20%초과~40%	40%초과~60%	60%초과~80%	80%초과~100%
12	2	2	3	2	3
13	2	3	2	3	3
14	2	3	3	3	3
15	3	3	3	3	3
16	3	3	3	3	4
17	3	3	4	3	4
18	3	4	3	4	4
19	3	4	4	4	4
20	4	4	4	4	4

※ 참여업체수가 20개 초과 시 위 배분표를 기준으로 등급구분 배분율에 따라 등급별 업체 수 결정

2) 참여업체 순위에 따른 배분율이 하나의 등급구간 내 포함되는 경우 해당 점수를 적용한다.

참여업체 순위에 따른 배분율이 2개 이상 등급구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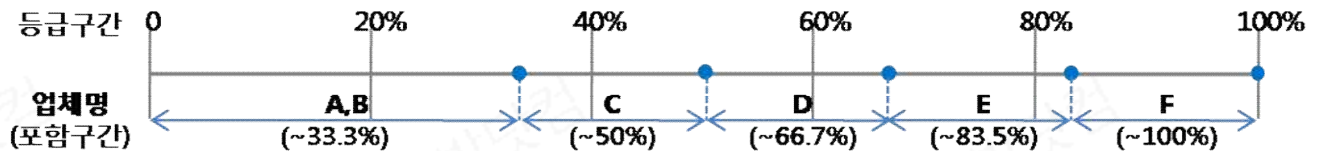
단, 참여업체의 순위에 따른 배분율이 2개 이상 등급구간에 걸쳐있는 경우라도 높은 등급의 구간에 점수를 적용받은 업체가 있다면 한 단계 낮은 등급의 점수로 한다.

[예시]

<예1) 6개 업체 참여 시 : A, B업체의 평가건수가 동점인 경우>

- A, B업체의 배분율이 0~33.3%로 '0~ 20%이내', '20%초과~40%이내'의 2개 등급구간에 걸쳐있어 상위등급인 '0~ 20%이내'의 등급구간 점수인 10점을 받음.
- C업체의 경우 배분율은 33.3%~50%로 '20%초과~40%이내', '40%초과~60%이내'의 2개 등급구간에 걸쳐있어 상위 등급인 '20%초과~40%이내' 등급구간 점수인 8점을 받음.

업체명	A	B	C	D	E	F
평가건수	6	6	5	3	2	1
평점	10	10	8	6	4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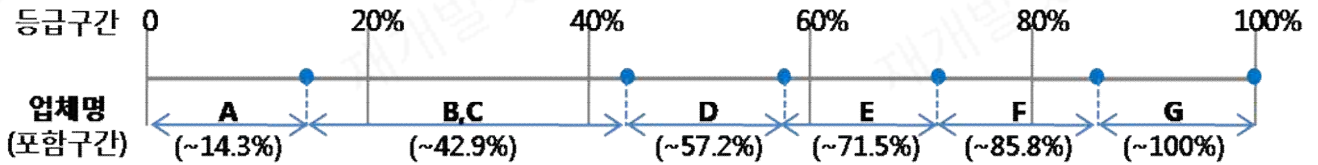


<예2) 7개 업체 참여 시 : B, C업체의 평가건수가 동점인 경우>

- B, C업체의 경우 배분율이 14.3%~42.9%로 '0~ 20%이내', '20%초과~40%이내', '40%초과~60%이내'의 3개 등급구간에 걸쳐있어 상위 등급인 '0~ 20%이내' 등급구간 점수인 10점을 받아야 하나, A업체가 '0~ 20%이내' 등급구간의 점수를 받았으므로 한 단계 낮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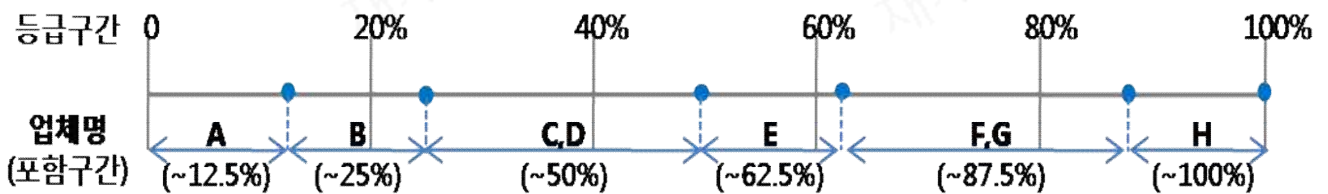
'20%초과~40%이내' 등급구간 점수인 8점을 받음.

업체명	A	B	C	D	E	F	G
평가건수	7	6	6	5	3	2	1
평점	10	8	8	6	4	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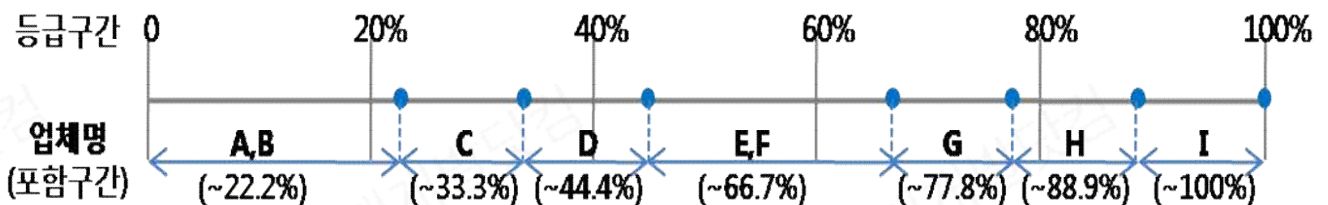
<예3) 8개 업체 참여 시 : C,D업체, F,G업체의 평가건수가 동점인 경우>

업체명	A	B	C	D	E	F	G	H
평가건수	6	5	4	4	3	2	2	1
평점	10	8	6	6	4	2	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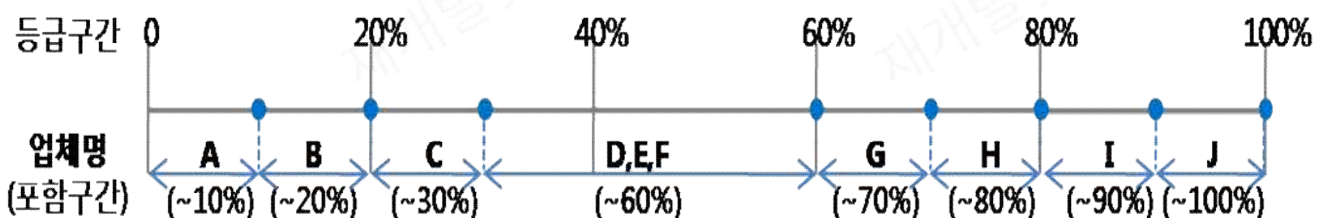
<예4) 9개 업체 참여 시 : A,B업체, E,F업체의 평가건수가 동점인 경우>

업체명	A	B	C	D	E	F	G	H	I
평가건수	7	7	6	5	4	4	3	2	1
평점	10	10	8	6	4	4	4	2	2



<예4) 10개 업체 참여 시 : D,E,F업체의 평가건수가 동점인 경우>

업체명	A	B	C	D	E	F	G	H	I	J
평가건수	8	7	6	5	5	5	4	3	2	1
평점	10	10	8	6	6	6	4	4	2	2



4. 감정평가법인 참여 실적 관리

가. 구청장은 조례 시행일 이후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감정평가법인 선정 현황을 선정 결과 공고(서식13) 즉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정비사업정보모판)에 입력한다.

※ 추정금액, 선정 감정평가법인 등 기본 정보는 반드시 입력해야함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시스템을 활용하여 선정된 실적도 반드시 입력해야함

나. 계약일자, 감정평가서(완료)제출일, 평가총액(종전, 종후, 세입자) 등은 각 단계가 끝난 즉시 추가로 정비사업관리시스템(정비사업정보모판)에 입력한다.

5. 감정평가 수행 의견서 제출

가. 감정평가법인 선정(자치구 및 조합 선정대상 포함) 후 평가가 종료되면 정비사업 시행자 및 조합원은 감정평가 수행 의견서를 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감정평가 수행의견이 없는 경우 “보통”으로 인정한다.

2) 자치구청장은 서울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조합원에게 감정평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자치구청장은 가목의 따라 제출된 감정평가 수행 의견서와 자치구청장이 작성한 감정평가 수행 의견서를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다. 자치구청장은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된 감정평가 수행 의견서에 대한 평가 결과를 향후 참여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사후서비스 제안 정도를 평가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라. 자치구청장은 정비사업시행자가 다목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6. 기 타

가.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 여백에 업체 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나.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 작성 및 평가방법, 심의위원 구성 등의 세부 기준(안)에 대한 사항은 조례 및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 한 경우 자치구청장이 정한다.

다.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위한 관련 서식은 붙임 서식을 참고하되 필요한 경우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붙임 서식

1. (서식1) 정비사업 감정평가법인 선정 공고문(예시)
2. (서식2) 정비사업 감정평가법인 선정 결과 공고문(예시)
3. (서식3) 감정평가 참여 신청서 1부.
4. (서식4) 업무수행실적
5. (서식5) 기존 감정평가참여 수행실적
6. (서식6)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7. (서식7) 공동수급 협정 체결 현황
8. (서식8) 감정평가수수료(요율) 제안서
9. (서식9) 감정평가 수행계획 제안서
10. (서식10) 감정평가 수행 의견서(자치구청장)
11. (서식11) 감정평가 수행 의견서(사업시행자)
12. (서식12) 감정평가 수행 의견서(조합원)

【서식1】

서울특별시 00구 공고 제20 - 호

정비사업 감정평가법인 선정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35조 규정에 따라 00구역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도시환경·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위해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위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00구청장

1. 개 요

사 업 명	규 모	발주부서	선정할 감정평가법인수
00구역 주택재개발·주택 재건축·도시환경· 가로주택정비사업	- 위 치 : - 구역면적 : m^2 - 건물동수 : 동 - 계획세대 : 세대(임대 포함) - 세입자 손실보상 : 건		0개

2. 신청서 접수

- 일 시 : 20 . . . () 09:00 ~ 18:00
 - 장 소 :
 - 유의사항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등 불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인감 날인) 및 재직증명서 제출
- ※ 00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 받을 수 있음 (별도 교부 없음)

3. 제출서류

- ① 감정평가 참여 신청서 1부(붙임 서식3 ~ 서식9 포함)
 - 가격제안서는 밀봉하여 제출
- ②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인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③ 서울사무소(본사 또는 지사 포함) 소속 감정평가사 현황 각 1부
- ④ 참여 감정평가사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각 1부
- ⑤ 신청서 제출 유의사항
 -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의 평가는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감정평가사는 공고일 전일 각 협회 등에 등록을 필하고 감정평가법인 선정 공고일 전일에 입사한자이어야 함
 - 평가자료는 우리 구에서 배부한 신청서 작성 지침 및 서식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평가자료 제출 시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신분증과 인감을 지참해야 함

4. 자격요건

- 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 국토교통부 고시 및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등록된 자격 기준에 적합한 감정평가법인
- ② 참여감정평가사가 속해있는 근무지(본사 또는 지사 포함)가 서울시에 위치 할 것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업무수주 등과 관련하여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3.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 ④ 감정평가법인선정 안내 공고 접수기간에 참여 신청을 완료한 업체일 것

5. 감정평가법인 선정

- 일 시 : 20 . . . 00:00 까지(예정)
 -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감정평가가 제시한 수수료 포함)한 업체에 대하여 순위 결정
 - 1, 2위를 00구역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도시환경·가로주택정비사업 감정평가법인 선정
- 장 소 : 00구청 0000과

○ 선정방법

- 신청서 접수 시 제출된 관계 서류(감정평가가 제시한 수수료 포함)를 심사기준표에 의거 채점하여 순위를 결정하고, 순위에 따라 1, 2위로 선정된 2개 감정평가법인을 계약대상자로 선정
- 평가 결과가 동점인 경우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
- 1, 2위로 선정된 감정평가법인중 5일 이내에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나 참여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제출할 경우에는 차기 순위 업체를 계약대상자로 선정
- 참여업체 수 및 순위별 배분 등 기준은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감정평가법인 선정 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6. 평가수수료 결정

- 감정평가 수수료는 최종 감정평가금액에 국토교통부의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및 감정평가법인이 입찰 시 제출한 감정평가수수료 요율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 정산한다.

○ 기초금액

- 가. 감정평가수수료 산출 기준 : 억원 ×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요율)
- 나. 종전자산평가액 : 억원, 종후자산평가액 : 억원
- 다. 세입자 손실보상 평가액(평가대상 건수에 의함) : 억원

7. 기타 유의사항

- 가. 감정평가법인 선정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및 정비사업 감정평가법인 선정 입찰 공고에 따라 선정 후 통지함
- 나. 선정 후 계약체결이전 부적격자 판명 또는 불가피한 사유(부도 등)로 인하여 사업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5항의 선정방법 또는 재선정 절차를 진행하여 결정함
- 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감정평가법인에게 책임이 있음
- 라. 감정평가 참여사업의 세부내용은 00구청 0000과(☎02- - 담당)로 문의
- 마. 본 안내문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구 홈페이지(공지사항)에 변경사항을 게시할 예정이며 변경된 내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사. 본 공고문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그에 따른 예규에 준하여 처리하며 상기 법령에 따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우리구의 유권해석에 따름

붙임 감정평가 참여 신청서 등 서식 각 1부

1. (서식3) 감정평가 참여 신청서
3. (서식4) 업무수행실적
4. (서식5) 기존 감정평가참여 수행실적
5. (서식6)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6. (서식7) 공동수급 협정 체결 현황 * 공동도급시
- 공동수급 협정서 1부, 합의각서 1부 첨부
7. (서식8) 감정평가수수료(요율) 제안서
8. (서식9) 감정평가 수행계획 제안서

【서식2】

서울특별시 00구 공고 제20 - 호

정비사업 감정평가법인 선정 결과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35조 규정에 따라 00구역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도시환경·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위해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감정평가법인 선정 결과를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00구청장

1. 개 요

사 업 명	규 모	발주부서	선정할 감정평가법인수
00구역 주택재개발·주택 재건축·도시환경· 가로주택정비사업	- 위 치 : - 구역면적 : m^2 - 건물동수 : 동 - 계획세대 : 세대(임대 포함) - 세입자 손실보상 : 건		0개

2. 선정결과 : 00감정평가법인 (00개 업체 참여)

【서식3】

감정평가 참여 신청서

수 신 :

참 조 :

제 목 : 감정평가 참여 신청서 제출

본 법인은 아래 구역에 대한 감정평가에 참여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평가자료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 구 역 명 :

- 붙 임 1. 업무수행실적 서식 1부.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1부. 끝.

20 .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소속감정평가사수(서울시 소재) :

전화번호 : , FAX번호 :

작성자 : (연락처 :)

【서식 4】

업무수행실적

대상구역	발주기관	용역기간 (년/월/일)		수행실적		지분율 (%)
		계약	준공	건수	평가금액	
소 계						

※ 조례 [별표3] 평가항목① 업무수행실적은 최근 3년 입찰참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여법인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증빙서류 미제출시 평가건수, 평가금액의 점수를 득할 수 없다.

붙임 한국감정평가사협회(정비사업시행자)가 발행한 수행실적 확인서 등 증빙서류

【서식 5】

기존 감정평가참여 수행실적

대상구역	발주기관	용역기간 (년/월/일)		수행실적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자치구청장이 고시한 추정금액 기재		지분율 (%)	선정일
		계약	준공	건수	평가금액		
소 계							

- ※ 최근 3년간 서울시 자치구청장이 선정하여 평가한 정비사업 관리처분(종전, 종후, 세입자 손실보상) 평가 금액 및 횟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단, 모든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추정금액(종전, 종후, 세입자 손실보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 입찰참여법인은 실적을 누락하여 제출시, 타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누락 1건당 5점씩 감점한다. (평가 총액, 평가횟수 각각 적용)
- ※ 선정일은 자치구청장이 선정한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 선정 결과 공고일로 한다. 다만, 자치구청장이 선정 결과 공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자치구에서 감정평가법인을 결정(선정)한 일자로 내부방침 등의 결재일로 본다. (자치구청장이 공고 하지 않아 선정일 확인이 어려울 경우 공란으로 두고 자치구청장이 확인)

붙임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자치구청장)가 발행한 수행실적 확인서 등 증빙서류

【서식 6】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업체명 및 감정평가사 성명	행정처분명	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 유 요 약
		~			
		~			
		~			
계					

※ 최근 3년간(공고일 전일 기준) 감정평가법인이 업무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횟수를 받은 사항과 소속 감정평가사의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견책 횟수 등 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하고 증빙 서류 첨부

붙 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확인서

【서식 7】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

구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계					100%	

※ 공동도급인 경우에만 작성함

- 붙임 1. 공동수급 협정서 1부
2. 합의각서 1부

【서식 8】

감정평가수수료(요율) 제안서

입찰 내 용	공고번호		입찰일자	20 . . .
	사 업 명			
	제안가격	추정감정평가액 : 감정평가 수수료 제안금액 : 기준요율금액 X %(수수료요율)		
입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감정평가 수수료 산정 내역서 1부.

입찰자

(인)

OO구청장 귀하

【서식 9】

심사번호

(크기 : 가로 20mm, 세로 윗열 10mm, 아랫열 2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감정평가 수행계획 제안서

(서울남산체B, 24포인트, 중앙정렬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 . 00.

(서울한강체M, 20포인트, 중앙정렬,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업 체 명

목차

(15포인트, 왼쪽정렬, 줄간격 160%)

1. 업무추진계획

(15포인트, 왼쪽정렬, 줄간격 160%)

* 합리적인 감정평가를 위한 추진 계획, 추진 일정 등

2. 인력투입계획

(15포인트, 왼쪽정렬, 줄간격 160%)

* 참여 감정평가사 평균 실무경력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자격취득일	감정평가 실무경력		비고
				근무기관	기간(년월)	
1					~ (년월)	소계년월
					~ (년월)	
					~ (년월)	
					~ (년월)	
					~ (년월)	
					~ (년월)	
평균 실무경력 : 년 월						

※ 참여하는 감정평가사 전원을 기재하며, 평균 실무경력은 자격취득일 이후 참여 감정평가사의 실무경력을 합한 후 총 참여 감정평가사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 감정평가 업무를 달성하기 위한 업무별 인력 투입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사후서비스 제안정도

(15포인트, 왼쪽정렬, 줄간격 160%)

* 사업수행과정 예상 민원 등에 따른 서비스 제안대책 등

【서식 10】

감정평가 수행 의견서(자치구청장)

자치구명					
구역명		위 치			
감정평가법인		담 당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서 제출일자		감정평가서 번 호			
항 목	심사의견				
감정평가서 충실도	감정평가서 기일 내 제출 및 감정평가서의 내용 · 기재사항 등이 충실히 반영되어 작성되었는지 여부 판단				
	매우만족 (25)	만족 (20)	보통 (15)	불만족 (10)	매우불만족 (5)
	기타의견				
민원대처 등	감정평가와 관련되어 발생한 민원에 대해 감정평가사 응대(해결)의 성실성 및 적극성 판단				
	매우만족 (25)	만족 (20)	보통 (15)	불만족 (10)	매우불만족 (5)
	기타의견				
기 타					

【서식 11】

감정평가 수행 의견서(사업시행자)

구역명					위치				
사업시행자 명칭					대표자				
감정평가법인					담당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서 제출일자					감정평가서 번호				
항목	심사의견								
담당평가사 업무 성실도	감정평가사의 현장조사 충실도 및 평가업무에 대한 성실도 판단								
	매우만족 (25)		만족 (20)		보통 (15)		불만족 (10)		매우불만족 (5)
	기타의견								
감정평가서 충실도	감정평가서 기일 내 제출 및 감정평가서의 내용·기재사항 등이 충실히 반영되어 작성되었는지 여부 판단								
	매우만족 (25)		만족 (20)		보통 (15)		불만족 (10)		매우불만족 (5)
	기타의견								
감정평가와 관련된 서비스 만족도	감정평가 업무수행 과정 중 요청자료 또는 자문에 성실히 응대하였는지 여부 및 평가와 관련된 서비스 (사전·사후)에 대한 만족도 판단								
	매우만족 (25)		만족 (20)		보통 (15)		불만족 (10)		매우불만족 (5)
	기타의견								
민원대처 등	감정평가와 관련되어 발생한 민원에 대해 감정평가사 응대(해결)의 성실성 및 적극성 판단								
	매우만족 (25)		만족 (20)		보통 (15)		불만족 (10)		매우불만족 (5)
	기타의견								
기타									

20 . . .

제출자 :

(인)

00구청장 귀하

【서식 12】

감정평가 수행 의견서(조합원용)

구역명					
성명			소유권위치		
감정평가법인			담당 감정평가사		
항목	심사의견				
감정평가와 관련된 만족도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감정평가사 응대(해결)의 성실성 및 평가와 관련된 만족도 판단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기타의견				
기타					

20 . . .

제출자 :

(인)

00구청장 귀하